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24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기구 신설을 통해 민선7기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, 기관 소관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정 핵심과제 집중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

- 남북관계의 지속 개선을 위해 사회문화·경제협력 등 시정 전반의 교류협력사업을 총괄 전담하는 '남북협력추진단' 신설

나. 기관별 소관업무 조정을 통한 현안 추진체계 개편

- 안전총괄본부 물리적 보도환경 개선 기능을 도시교통본부 보행환경 개선과 일원화함으로써 '보행 중심도시' 서울 추진역량 강화
- 건설업 정책, 하도급 부조리 근절 및 건설업 대금지급 관리 사무를 통합하여, 안전총괄본부에 건설혁신 기능을 명시적으로 부여

다. 서울공예박물관의 체계적 운영(준비)을 위한 소속기관 신설

- 공예품수집·관리 등 개관 준비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한 서울공예박물관(사업소) 신설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18. 8. 2. ~ 8. 6.) 결과: 의견 없음

(2) 신·구 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 붙임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.

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

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을 두며, 남북협력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남북교류사업 총괄 및 사회문화교류,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2. 개발 및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

제77조제1항 중 “서울역사박물관 및 한성백제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, 한성백제박물관 및 서울공예박물관”으로 한다.

제77조제2항 중 “새문안로 55(신문로2가)에 두며”를 “새문안로

55(신문로2가)에 두고”로 하고, “위례성대로 71(방이동)에 둔다”를 “위례성대로 71(방이동)에 두며, 서울공예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(안국동)에 둔다”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21조제3항의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남북협력추진단장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“대외협력담당관”을 “남북협력담당관”으로 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5조(기획조정실)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br>1.~5. (생 략)<br>6. 남북교류협력 총괄·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<br>7.~12. (생 략) | 제5조(기획조정실) ----------.<br>1.~5. (현행과 같음)<br>〈삭 제〉<br>6.~11. (현행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) |
| 제15조(안전총괄본부) 안전총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br>1.~3. (생 략)<br>4.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| 제15조(안전총괄본부) ----------.<br>1.~3. (현행과 같음)<br>4.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 |
| 제21조(한시기구) ①~② (생 략) | 제21조(한시기구) ①~② (현행과 같음) |
| 〈신 설〉 | ③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을 두며, 남북협력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br>1. 남북교류사업 총괄 및 사회문화교류,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<br>2. 개발 및 경제협력에 관한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| 사항 |
| 제77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**서울역사박물관 및 한성백제박물관**(이하 이 절에서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| 제77조(설치) ①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**서울역사박물관, 한성백제박물관 및 서울공예박물관** ----------<br>---------- . |
| ②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**새문안로 55(신문로2가)에 두며**,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**위례성대로 71(방이동)에 둔다**. | ② ----------<br>---- **새문안로 55(신문로2가)에 두고**, ----------<br>---------- **위례성대로 71(방이동)에 두며, 서울공예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(안국동)에 둔다**. |

#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## 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관 신설 및 실·본부·국 소관 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## 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☏ 2133-6724)